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6호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9 3 8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9 4 7 호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수용제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4
○ 공	고 제 9 4 8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5
○ 공	고 제 9 5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
○ 공	고 제 9 5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8
○ 공	고 제 9 7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31
○ 공	고 제 9 7 4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산밀말공원] 결정(변경) 입 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44
○ 공	고 제 9 7 8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46
○ 공	고 제 9 7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49

고 시

○ 고	시 제 6 2 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51
○ 고	시 제 6 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5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93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5.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05.10. ~ 2019.05.24.
3. 공고대상 : **거4198 외 2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19-00045	**거4198	스파크 1.0 DOHC	(구월3동 1367-5) 문화로 97 현주약기 앞 노상	김*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번길 **, *동 ***호(**빌라)	2019.04.02 2019.04.25	기타	2019.03.20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2	2019-00089	**누7789	마티즈 0.8S MT	(논현동 740-1) 영고개로815번길 70 소래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570대) / 논현고잔동	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반*동, **아파트)	2019.04.02 2019.04.25	기타	2019.03.19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3	2019-00091	**고7453	프라이드	(논현동 740-1) 영고개로815번길 70 소래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570대) / 논현고잔동	오*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길 ** (망*동)	2019.04.02 2019.04.25	기타	2019.03.20	(주)서울폐차사업소	032-442-666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947호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8-5호(2018.1.15.)로 실시계획 인가된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만의골소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45-10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13. ~ 2019. 5. 28.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453-6143)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48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구7661, **어9207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 13.(월) ~ 5.28.(화)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1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채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구 7661	나*현	2019-05-08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고광도 번호들)	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16, ***호(구월동, **주택)
2	**머 9207	문*두	2019-05-09	폐문부재	미인증 후등화, 애플 쉘 LED	216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번길 ***, ***호(논현동)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9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4.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정비로 현행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근거마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9조의5)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건설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23, FAX 453-27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한 정비로 현행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근거 마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9조의5)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계획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내용 반영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조제5호,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안 제2조제4호, 제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을 “사람에게 자전거를”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편의를위하여”를 “편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

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를 “남동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제9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기본 운영기간(시간)	비 고
운영기간	매년 1월~12월	
운영시간	09:00~17:00	
대여시간	2시간/1회(다인승 1시간/1회)	

1. 운영기간 및 시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 대여 가능시간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별표 2]

공영자전거 사용료(제9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자전거 종류	사용료	비 고
기본요금 (대여 후 120분까지)	1인용	2,000원	
	어린이용	1,000원	
	2인용	4,000원	
기본요금 (대여 후 60분까지)	다인승	5,000원	
초과요금	전 종류	30분당 500원 (최대 60분까지)	

1.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 대여신청자는 이용 예정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선납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회수 시 정산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기타 자 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	<u>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u> 제2조(정의) ----- -----.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 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 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

을 말한다.

2.·3. (생략)

4.“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주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사람에게 자전거를 -----
-----.

5.“주민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

----- 편의를 위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

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 설>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신 설>

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 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
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

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
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
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

<신 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
전거업무담당국장, 자전거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2명

2. 3. (생 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
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
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
-----.

② -----

----- 사람 중 -----
-----.

1. 남동구의회 -----
--

2. 3. (현행과 같음)

4. -----

--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직을 원하는 때
2.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참고자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문)

(제정) 2009.07.31 조례 제966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 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국장, 자전거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명
2. 유관기관 공무원(교육청, 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노상주차장(구월동 1371-16 일원)의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 5.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문화로 노상주차장(구월동 1371-16 일원)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상)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시행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문화로 노상주차장	구월3동 1371-16	139	2급지	2019.6.17.

4. 주차요금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일주차	월정기주차	운영시간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노상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10:00~19:00

5. 공고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5.17. ~ 2019.6.14.(28일간)

8.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9.6.14.(금)까지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2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노상공영주차장 (구월동1371-16번지 일원)의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 및 인력기준 현행화(안 제2조의 2)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화(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52,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별첨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 설치 및 인력기준 현행화 (안 제2조의 2)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안 제4조 제1항)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거나,**”를 “**설치·운영하거나, 그**”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5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노인복지법 제43조”를 “「노인복지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사항에 관하여”를 “운영사항을”로, “관하여”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31조 규정에 <u>의하여</u>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u>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따라</u> ----- ----- ----- ----- ----- ----- ----- <u>필요한</u> <u>사항을</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 <u>함은</u> 노인들의 능력·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이란</u> ----- ----- ----- -----.
제2조의2(설치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u>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u> 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u> 같다.	제2조의2(설치 및 인력기준) ---- ----- <u>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u>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
제3조(사업 및 기능) <u>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u> 에	제3조(사업 및 기능) <u>노인인력개발센터</u> ----- -----

서는 다음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에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② (생략)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운영 등) ① -----

----- 설치·운
영하거나, 그 -----

----- 법인·단체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
라 -----

---.

1. ~ 5. (생 략)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생 략)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노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43조 -----

5.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 ① -----

----- 범위에서 -----
----- 따른 -----
----- 범
위에서 -----.

② -----

범위-----
-----.

제12조(지도감독) ① -----

인인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운영사항을 -----

----- 대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른
----- 하는 경
우에는 -----

--.

제13조(보험가입)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
조의3에 따라 -----

-----.

제15조(시행규칙) -----

----- 필요 -----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4. 2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 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974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산밑말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 · 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산밑말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산밑말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면적(㎡)	시설율(%)	
변경	산밑말 공원	근린 공원	만수동 산1-2	29,545	3,710	12.56	29,545	4,253	14.39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산밑말 공원	- 시설률 변경 - 기 정 : 12.56% - 변 경 : 14.39%	대상지 현황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29,545.0	100.00	29,545.0	100.00	
소 계	3,710.0	12.56	4,253.0	14.39	증 543.0
기 반 시 설	1,377.0	4.66	1,457.0	4.93	증 110.0
도 로	1,197.0	4.05	1,363.0	4.61	(증 166.0)
광 장	180.0	0.61	94.0	0.32	(감 86.0)
조 경 시 설	-	-	-	-	
휴 양 시 설	320.0	1.08	256.0	0.87	감 64.0
유 희 시 설	340.0	1.15	428.0	1.45	증 88.0
운 동 시 설	1,485.0	5.03	817.0	2.77	감 668.0
교 양 시 설	-	-	-	-	
편 익 시 설	48.0	0.16	942.0	3.19	증 894.0
관 리 시 설	140.0	0.47	353.0	1.19	증 213.0
기 타 시 설	-	-	-	-	
녹지 및 기타	25,835.0	87.44	25,292.0	85.61	감 543.0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14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978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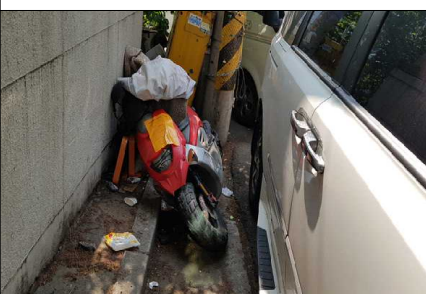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5.16.~2019.05.30.
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6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9-002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30.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에코메트로3차 더타워상가 화동옥 옆(커피나루 앞) 인도
	2019-0024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30.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20 바닷가소망횃집 앞
	2019-0024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30.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 나동하모니센터 자전거거치대
	2019-00246 (2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30.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 52에서 공단방향으로 20미터 앞 인도 위
	2019-0024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5.15. ○ 견인일 : 2019.05.30.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6번길 31 에이스식자재마트 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 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22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남로16번길 75 에코메트로3차 더타워상가 화동옥 옆(커 피나루 앞) 인도(논현고잔동·논현동 751-1)	2019.05.30. 이후	견인예정	
2	2019-0024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1동 111-352) 장도로 86-20 바닷가소망횃집 앞	2019.05.30. 이후	견인예정	
3	2019-0024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2동 644-1) 호구포로 203-31 나동하모니센터 자전거거치 대	2019.05.30. 이후	견인예정	
4	2019-0024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2동) 논곡로 52에서 공단방향으로 20미터 앞 인도 위	2019.05.24. 이후	견인예정	
5	2019-002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2동) 석촌로6번길 31 에이스식자재마트 뒤	2019.05.24.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979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도2693, ****타6013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5.16.(목) ~ 5.31.(금)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5.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채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5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도2693	박*현	2019-05-14	폐문부재	글라스윙 및 리플렉터 LED	216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호(논현동)
2	****타6013	문*우	2019-15-16	폐문부재	미인증 LED	21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번길 **, *동 ***호 (남촌동, **빌라)

공 고

남동구 고시 제2019-6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 5. 14.

남 동 구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2872)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열명 및 도열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만수동		746-19 전	966,00	966,00	96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인천030
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280-5 전	459,00	459,00	459,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27-11 전	591,00	591,00	591,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02-19 전	846,00	846,00	84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NJ 52-9-17-040^인천040
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58-1 전	1,576,00	1,576,00	1,57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280-18 전	285,00	285,00	285,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588-1 전	500,00	500,00	500,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18-23 전	508,00	508,00	508,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95-28 전	955,00	955,00	955,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1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만수동		715-15 전	2,493,00	2,493,00	2,493,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인천030
1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125-3 전	823,00	823,00	823,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1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논현동		161-5 과	868,00	868,00	868,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1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88 과	4,835,00	4,835,00	4,835,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1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수산동		60-5 과	2,930,00	2,930,00	2,930,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30^인천030
1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만수동		402-11 전	10,001,00	10,001,00	10,001,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20^인천020
1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14-1 전	427,00	427,00	427,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1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603-3 전	1,088,00	1,088,00	1,088,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1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266-112 전	2,047,00	2,047,00	2,047,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1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18-31 전	273,00	273,00	273,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인천039
2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95-18 전	200,00	200,00	200,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인천040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적			전용용도	도면명 및 도면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2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만수동		816-10 전	515,00	515,00	515,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2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28-7 전	206,00	206,00	20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2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립동		402-13 전	494,00	494,00	494,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민천040
2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립동		412-39 전	314,00	314,00	314,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민천040
2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643-3 전	959,00	959,00	959,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2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1-11 전	159,00	159,00	159,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2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립동		402-4 과	991,00	991,00	991,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40~민천040
2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280-6 전	547,00	547,00	547,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2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138-6 전	1,096,00	1,096,00	1,09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12~만양012
3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50-5 전	426,00	426,00	42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3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수산동		26 전	1,954,00	1,954,00	1,954,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3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647-5 전	1,105,00	1,105,00	1,105,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3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장수동		597-17 전	304,00	304,009	304,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3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립동		425-13 전	271,00	271,00	271,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민천039
35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수산동		334-2 전	1,768,00	1,768,00	1,768,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36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립동		418-29 전	376,00	376,00	376,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민천039
37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275-25 전	744,00	744,00	744,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8-021~만양021
38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서창동		302-14 과	1,484,00	1,484,00	1,484,00	과(양성화신고)	NJ 52-9-17-030~민천030 NJ 52-9-18-021~만양021
39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구월동		634-4 과	2,669,00	2,669,00	2,669,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40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수산동		288-8 과	10,873,00	10,873,00	10,873,00	과(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별지 제6호 서식]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

일련 번호	변경유형	소재지				면 적			전용용도	도업명 및 도업번호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41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27-18 전	101,00	101,00	101,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민천039
42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만수동		816-11 전	459,00	459,00	459,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0^민천030
43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266-113 전	1,572,00	1,572,00	1,572,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40^민천040
44	공익용산지→준보전	남동구	도림동		427-10 전	678,00	678,00	678,00	전(양성화 신고)	NJ 52-9-17-039^민천039
소계	7-1-3					62,736,00	62,736,00	62,736,00		
합 계						62,736,00	62,736,00	62,736,00		

〈작성요령〉

- 7-1-3 유형 :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 전용용도는 골프장(), 스키장(), 산업단지(), 택지() 등으로 작성하고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89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7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 032-453 -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22-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89	2009.11.16.	행정구역명(만수동)을 이용하여 만수로로 제명	2019.5.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로 8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9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5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5	2009.11.16	경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인로599번길 1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5번길	9	2009.11.16	성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5.1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성말로35번길 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53-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7 (간석동)	2019.5.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6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5번길 9 (구월동)	2019.5.1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